

검 토 보 고 서

〈 전문위원 최종익 〉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-52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일

3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속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 및 돌봄 종합계획 수립(안 제3조~제4조)
- 나. 돌봄 사업과 서비스 지원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- 다. 돌봄 시설 설치·운영 및 보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- 라. 지역돌봄협의회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7조)
- 마. 지도·감독 및 예산·결산(안 제19조~제20조)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, 제6조(국가 등과 가정)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 돌봄센터)
- 2019.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[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-247(2019.1.23.)]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1

다. 기타사항

- 입법예고 : 2019. 3. 21. ~ 4. 1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원안동의
-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권고사항 없음
-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 : 원안 동의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4.23.)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, 그리고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 지원과 맞춤형 정보·상담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·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음.
- 동 제정안은 본칙 2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와 제4조(돌봄 종합계획 수립)에서 구청장은

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과 시책을 강구하고 매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와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,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의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정하였음.

- 또한, 안 제5조(돌봄 사업 지원)에서 제8조의 경우는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등의 돌봄 시행사업의 예산지원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 있는 급식 제공 등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초등학교 저학년, 맞벌이 가정, 다자녀가구 등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순위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급·간식비 등의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〈표 1〉 마포구 돌봄 시설 확충 계획

		(2019.1월 기준 / 단위 : 개소)					
구분	연도	2019	2020	2021	2022	2023	합계
	우리동네키움센터	2	4	5	5	-	16

- 계속해서, 안 제9조(돌봄 시설 설치·운영) 및 제10조(보험)에서는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' 등의 위탁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설 이용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다음은 안 제11조(지역돌봄협의회 설치)부터 제17조(수당 등)에서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·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회를 임기 2년으로 9명 이상

15명 이내로 설치·구성하고, 협의회 참석 위원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제척·기피·회피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연 2회의 회의 개최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.

- 안 제19조(지도·감독)와 제20조(예산·결산)의 경우는 돌봄 시설의 운영과 설비 기준, 안전사고 예방 및 종사자 관리와 재정관리상태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·감독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·승인 받도록 규정하였음.

7.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양육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9.4.16.자로 「아동복지법」이 일부 개정되어 ‘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’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는 등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과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·간식제공, 그리고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돌봄 상담 등 초등학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에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8. 기타자료

가. 비용추계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제5조(돌봄사업 지원), 제9조(돌봄 시설 설치·운영), 제16조(회의), 제17조(수당 등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① 지원금액

- 성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: 월 1,430천원
-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당 운영비: 월 700천원
- 지역돌봄협의회 회의(연3회) : 450천원(1인 10천원)
- 지역돌봄협의회 위원수당(연3회) : 2,310천원(11인×100천원×3회×70%)

② 지원대상 :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돌봄협의회 위원

1) 「아동복지법」 상 다함께돌봄센터(우리동네키움센터)

○ 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 계획 (2019.1월 기준/ 단위 : 개소)

구분 \ 연도	2019	2020	2021	2022	2023	합계
우리동네키움센터	2	4	5	5	-	16

2)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: 15인(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 수당 제외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2019	2020	2021	2022	2023	합계	
세출	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	13,300	50,400	92,400	134,400	134,400	424,900
	사무관리비	16,830	19,470	19,470	19,470	19,470	94,710
	업무추진비	150	450	450	450	450	1,950
총 비용	30,280	70,320	112,320	154,320	154,320	521,560	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2019	2020	2021	2022	2023	합계
자체수입						
지방세수입등	30,280	70,320	112,320	154,320	154,320	521,560
합계	30,280	70,320	112,320	154,320	154,320	521,560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재원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이운영
연락처	02-3153-8933

나. 관계법령

○ 「아동복지법」

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<신설 2019. 1. 15.>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15.]

○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

[시행 2019. 4. 16.] [보건복지부령 제625호, 2019. 4. 16., 일부개정]

제21조의2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등)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[본조신설 2019.4.16]

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(제21조의2 관련)

1. 설치기준

- 가.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
- 나.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, 사무 공간,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

2. 운영기준

- 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·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3. 종사자의 자격기준

- 가.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3)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·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학교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4)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5) 「의료법」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나.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 - 2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 - 3)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·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 - 4)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 - 5)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

○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6조(국가 등과 가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.

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